#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정치자금법위반·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증거위조교사· 제3자뇌물교부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위조 증거사용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·변호사법위



## 반·제3자뇌물취득·조세범처벌법위반

[대구지방법원 2016. 6. 3. 2015고합579, 2016고합11(병합), 2016고합221(병합)]

##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형진휘(기소), 최두천(기소, 공판), 송한섭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김승규 외 4인

### 【주문】

1

[피고인 1]

피고인을 판시 제1죄, 판시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년 및 벌금 105,700,000원에, 판시 제2죄, 제4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(다만, 단수금액은 버린다).

피고인으로부터 105,700,000원을 추징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피고인 2]

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, 판시 제2죄, 제3의 가, 다 죄, 제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

피고인으로부터 116,700,020원을 추징한다.

[피고인 3]

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, 판시 제2, 3,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[피고인 4(대판:피고인 3)]

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5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#### 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